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(박대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19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11.

발 의 자 : 박대출 · 윤영석 · 김성원
권영진 · 김용태 · 배준영
박수영 · 이인선 · 김정재
김상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으로 해당 공익사업이 인정
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
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 [양도대금을 채권으
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,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
지 보유하는 경우 100분의 35(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 100분의 45)]
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, 그 일몰기
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.

그런데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 조세특례의 일몰기한
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과
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
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77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29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p>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5]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 1. ~ 3. (생략) ② ~ ⑨ (생략)</p>	<p>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⑨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-